

의안
번호

4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0.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 학 동 의원 외 11인

나. 의안번호 : 제400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07.

라. 회부일자 : 2021. 10. 08.

2. 제안이유

-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항일독립운동, 항일독립운동 유적, 항일독립운동가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 나.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07. ~ 2021. 10. 13.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등

-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항일독립운동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행사, 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등 선양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며,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성북구 독립운동가 현황

동명	명수	독립운동가
계	122	
성북동	42	김동삼, 김광섭, 오세창, 이길용, 임 규, 최익환, 한용운, 김방우, 김복진, 김수룡, 박노태, 배성룡, 성봉진, 유진희, 이근창, 최용덕, 문석준, 박홍식, 이완기, 정진숙, 김석운, 김하경, 노현중, 방용모, 서광훈, 손용우, 안복산, 이종린, 정태식, 최두선, 최차손, 현학손, 강주환, 국순만, 김기진, 김성룡, 박용선, 박원장, 이성학, 장동옥, 조병호, 한순기
돈암동	40	안재홍, 정정화, 조소양, 김규식, 김재황, 신형균, 강영준, 강천룡, 권유근, 김동익, 박 철, 신락현, 심정섭, 장익민, 조성훈, 김대봉, 김월옥, 김학성, 노국환, 박래수, 송인현, 이기석, 이용상, 이정용, 이현우, 편강청덕, 홍석표, 강영옥, 김원근, 김원정, 김재권, 김진홍, 손경순, 송재옥, 암본정우, 유석복, 전명선, 김영순, 경기현, 이규갑
정릉동	16	김교신, 김의한, 유우석, 이규창, 장건상, 나중소, 김영규, 유영민, 유충성, 이강, 이은숙, 조화벽, 주영복, 김아동, 정종진, 황응선, 권태림
안암동	19	김현국, 오세덕, 최승우, 피한봉, 김순원, 김양복, 김종윤, 손진태, 김상준, 김용태, 양원길, 오세진, 이기을, 이병우, 이재성, 최경옥, 한홍택, 홍기문, 황금수
종암동	3	이원록(이육사), 이종암, 이극로
월곡동	1	정만산
장위동	1	이운장